

제5회 무주군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

2026.10.27.

심의번호	심의안건	심의내용	심의결과
1	『무주군 건축 조례』 일부 개정안	-『무주군 건축 조례』제10조의3(분야 별 전문 위원회) -『무주군 건축 조례』제35조제1항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-『무주군 건축 조례』제35조의2(시장정비 사업에 따른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 특례)	적정

심 의 사 항

구 분	심 의 사 항
건축분야	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합니다.